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촉구 건의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채수지 의원입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건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입니다.

이에 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건의합니다.

-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및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교사의 실제 학대 여부와 관계 없이 경찰에 신고되어, 수업에 배제되거나 직위가 해제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건의안 제출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